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학 박사학위 논문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아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채상국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지도교수 이 경 종

이 논문을 의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의 학 과

채 상 국

채상국의 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재 범 인

심사위원 이 경 중 인

심사위원 이 순 영 인

심사위원 홍 창 형 인

심사위원 이 상 구 인

아 주 대 학 교 대 학 원

2016년 12월 21일

## 감사의 글

저는 2006년 2월에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의과대학원 의학과에 입학하여 이제 의학박사 학위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위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의 영광을 갖게 된 것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이경중 교수님과 박재범 교수님의 오랜 기간 세심한 지도와 정신적 지지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두 분 교수님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해 주신 예방의학교실 이순영 교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정신건강의학교실 홍창형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논문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이상구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시작부터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 조사에 대한 자문 뿐 아니라 통계분석 및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준 김정립 선생님의 끊임없는 배려에 더없는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어머니, 묵묵히 지켜봐 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은 아내, 공부만 한다고 부엉이 박사라고 놀리던 딸, 아빠가 졸업할 즈음에는 군복무 중에 있을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논문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설문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원과 신우수 팀장 및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으

며,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변호사님들에게 진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채 상 국 올림



## 국문 요약

###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윤리연수에 참가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질문지 총 731부 중 복수 응답과 부정확하게 기입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68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보상부적절, 관계갈등’의 총 8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평가하였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단축형(PWI-SF)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방법은 카이제곱검정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681명 중 280명(41.1%)이 직무스트레스 ‘높음’에, 295명(43.3%)이 직무스트레스 ‘보통’에 속하였고, 135명(19.8%)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보통인 집단은 9.07배 높았고(95% CI: 1.20-68.58), 높은 집단은 69.24배(95% CI: 9.46-506.85) 높았다.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변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핵심어: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변호사

# 차 례

국문요약 .....	i
차 례 .....	ii
그림 차례 .....	iv
표 차례 .....	iv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6
II. 연구방법 .....	7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	7
2. 분석방법 .....	9
3. 측정 도구 및 변수 .....	11
가. 종속변수(사회심리적 스트레스) .....	11
나. 독립변수(직무스트레스) .....	12
다. 혼란변수 .....	14
III. 연구결과 .....	16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6
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	16



나. 직업관련 특성 .....	16
다. 생활습관 특성 .....	17
라. 직무스트레스 .....	17
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	17
2. 직무스트레스의 분포 .....	20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분포 .....	24
4.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28
5. 직무스트레스(하위영역별)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30
IV. 고찰 .....	33
V. 결론 및 제언 .....	43
참고문헌 .....	46
ABSTRACT .....	52
부록 .....	54

##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자료 수집 .....	8
그림 2. 연구의 틀 .....	10

## 표 차례

표 1. 변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하위영역 .....	13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8
표 3. 직무스트레스의 분포 .....	21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분포 .....	23
표 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분포 .....	25
표 6.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29
표 7. 직무스트레스(하위영역별)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	31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스트레스란 개인이 가진 자원에 부담을 초래하거나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환경과 개인 사이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Lazarus와 Folkman, 1984). 즉, 개인이 내적·외적 요구에 대하여 자신이 가진 자원으로 대처하기가 부담스럽거나 불가능할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정동화, 2010). 스트레스는 사회생활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장세진, 2000). 업무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필연적이며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생존과 안녕에 필요한 역동적인 힘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의 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안녕을 위협하고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송인숙, 2007).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직무 관련 스트레스(work-related stress)는 사람들이 지식과 능력에 부합하지 않고 대처 능력에 도전하는 직무 요구와 압력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에서는 직무스트레스(job stress)를 직무 요구 사항이 근로자의 능력, 자원 또는 요구와 부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유해한 신체적,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의 발생

원인을 밝히려는 이론적 모델은 크게 Karasek의 직무긴장모델(job strain model)과 Caplan의 인간환경적합이론(person-environment fit theory)이 대표적이다. 직무긴장모델에서는 높은 직무요구(job demand)와 낮은 직무 자율(job control)을 높은 직무 긴장(job strain)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은 떨어지며,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 발생의 위험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Karasek, 1979). 인간환경적합이론에서는 긴장이란 직업에 대한 개인의 동기(motives)와 환경이 제공해주는 여러 여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혹은 직장에서의 요구(demands)와 그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차이가 존재할 때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Caplan, 1983).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직무스트레스의 선행요인과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변수는 각기 다른 개념 및 변수이다(문형구 등, 2010). 스트레스 요인은 고온이나 소음과 같은 물리적인 요인 뿐 아니라 대인관계상의 갈등, 시간에 쫓기는 업무 등의 심리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박정선, 2005),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일의 과부하, 역할갈등 및 긴장, 직무 불안정성, 직장 내에서의 대인관계, 조직풍토 및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직무스트레스 인자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밝힐 수 있다(유경열 등, 201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반응능력의 수준을 넘어서거나 또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각 개인들의 자원에 위협을 가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심리적 인간의 갈등상태를 표현해 주는 개념이다(장세진, 2000). 스트레스 반응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행동학적, 생리적인 반응으로써 이는 다양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박정선, 2005), 우울, 불안, 심리학적 신체증상, 자

기 신뢰감의 상실, 사회적 역기능, 부적응, 수행능력 상실, 일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측정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를 밝힐 수 있다(유경열 등, 2011).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몇몇 선행연구에서 밝혀져 왔는데,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의 비율이 높았으며(Estryn-Behar 등, 1990),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유경열 등, 2011). 또한 고상백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 특성별로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불안정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변호사의 직무는 사회 정의와 기본적 인권 옹호라는 사명을 실현하는 것이며, 개별 경제주체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오늘날 변호사들은 국내외적으로 법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놓여있다. 국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의한 사전분쟁조정제도 등이 활성화되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변호사의 직무와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손해사정사 등 직무와의 경계도 갈수록 모호해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단기간에 변호사 배출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06년 제1호 변호사를 배출한 이래 2006년 1만 번의 등록번호를 가진 변호사를 배출할 때까지

1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약 8년 만인 2014년에 2만 번의 등록번호를 받은 변호사가 배출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 변호사 배출 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사법연수원을 통한 변호사 자격자를 배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을 통해 1,451명의 변호사 자격자의 배출한 이래 매년마다 약 1,5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자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FTA (Free Trade Agreement) 발효로 그 동안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왔으며, 2014년 8월 기준으로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9개소, 외국법자문사는 71명이었다. 그리고 2014년 4월 기준으로, 국내 로펌에 취업한 외국변호사는 내국인 243명, 외국인 219명 등 총 462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타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변호사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7월 EU(European Union), 2017년 3월 미국에 최종 단계의 법률시장 개방을 한다. 최종 단계 법률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면 외국법자문사 법률사무소는 국내 로펌과 합작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한 뒤 국내 변호사를 채용하여 제한된 범위의 송무사건을 수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내외 법률시장의 환경변화로 변호사의 사건 수임 경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채상국, 2015). 이로 인해 변호사들의 스트레스도 시간이 갈수록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변호사의 스트레스 증가는 개별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려 효과적인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변호사들의 과중한 스트레스는 변호사들로 하여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발전을 꾀할 수 없

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 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재형(2002)이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1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의 전문 직업성, 직무스트레스, 직업만족도 등 주관적인 태도에 관한 조사를 시도한 것이 최초 변호사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연구라 할 수 있으나, 이 후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매우 드물었고, 특히 변호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 1) 변호사의 일반적 특성(사회 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및 직업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2)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변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4)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는 변호사 윤리연수에 참가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014년 6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윤리연수가 개최되는 현장에서 변호사에게 직접 배포하여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작성하게 하였고, 배포 당일 현장에서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팩스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수거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윤리연수에 참가한 변호사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였고, 설문을 통하여 제공받은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될 것이며 향후 연구 목적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연구 수행을 위해 배포된 질문지는 총 1,751부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731부로 회수율은 41.7%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복수 응답(또는 응답의 누락)과 부정확하게 기입된 50부를 제외하고 총 68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그림 1).

우리나라 전체 개업 변호사(2014.12.31 기준): N=15,954

남: N=12,491, 여: N=3,457

26~39세: N=6,620, 40~49세: N=4,900, 50세 이상: N=4,434

출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개업회원 현황에 대한 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회원현황자료).



그림 1. 연구자료 수집

## 2. 분석방법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사회 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특성, 직업 관련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빈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 간의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카이제곱검정(chi-squared test)을 통해 실시하였고,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은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서는 성, 연령, 결혼 상태, 음주, 흡연, 자격취득경로, 경력기간, 사무소형태, 사무소에서의 지위 등을 보정한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제시하였다(그림 2). 이 연구에 사용한 모든 분석은 SAS Version 9.3 (SAS Inc., Cary, N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유의성 검정에 대한 p값은 0.05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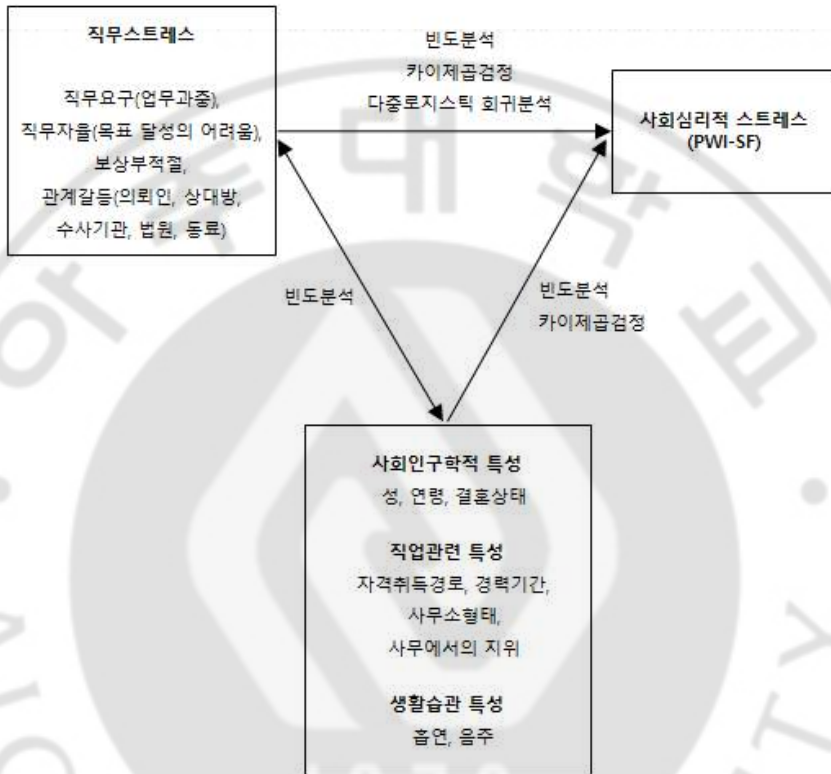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의 틀

### 3. 측정 도구 및 변수

#### 가. 종속변수(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sychosocial stress)이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한 도구는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 단축형인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을 이용하였다.

PWI-SF는 Goldberg(1978)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2단계에 걸친 문항 수정과 척도의 수정을 거쳐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심리적 건강측정도구(PWI)를 18개 문항으로 단축한 측정도구이다. 이 도구는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기보다 주로 직업 집단,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 수준을 비교하고 스트레스 위험요인 및 질병위험 요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 즉, PWI-SF는 정신과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정상인을 구별하기 위한 진단학적인 목적보다는 직장인 및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장세진, 2000).

PWI-SF는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PWI-SF의 점수는 각 문항에 0-1-2-3으로 순코딩을 하되, 일부 문항은 (1, 5, 6, 8, 9, 10, 11, 12, 14, 17, 18번 문항) 3-2-1-0으로 역코딩하여, 18개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 후 산정하였다. 합산된 총 점수는 최하 0부터 최고 54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몇몇 연구들에서 PWI-SF의 점수는 8점 이하를 ‘건강군’, 9~

26점 이하를 ‘잠재적 스트레스군’, 27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점수가 8점 이하인 ‘건강군’의 분포가 매우 낮아 결과분석을 고려하여 ‘건강군’과 ‘잠재적 스트레스군’을 ‘저위험군’으로, 나머지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PWI-SF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0.926$ 으로 문항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독립변수(직무스트레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직무스트레스(occupational stress)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Short Form (KOSS-SF)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KOSS-SF는 기존에 사용되어져 오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으로(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4),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7개 하위영역,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장세진 등, 2005).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변호사의 직무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변호사의 직업이 그 업무의 특성상 일반 직장문화 또는 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KOSS-SF의 7개 하위영역 중 직무

불안정, 조직체계, 직장문화 영역은 최종 평가 후 제외하고 변호사 직업 실태에 맞게 직무요구(업무과중), 직무자율(목표 달성의 어려움), 보상부적절, 관계갈등(의뢰인, 상대방, 수사기관, 법원, 동료 관계)에 걸쳐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하위영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변호사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하위영역**

하위영역	내 용
직무요구	직무에 대한 부담 정도를 의미하며 근무 시간, 업무량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무자율	직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재량활용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기술적 재량 및 자율성, 업무예측가능성, 직무수행권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목표달성의 어려움이 여기에 속한다.
보상부적절	업무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보상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일에 대한 보상, 제정의 정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관계갈등	상사 및 동료 간의 도움 또는 지지 부족 등의 대인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며, 이 연구에서 의뢰인, 상대방 및 대리인, 법관 및 법원 직원, 검사 및 수사관, 동료 및 직원 등과의 관계가 여기에 속한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무요구(업무과중)는 “당신은 장시간 근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자율(목표 달성의 어려움)은 “당신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상부적절은 “당신은 열악한 보상 및 재정적 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관계갈등은 의뢰인과의 관계(이하, ‘의뢰인 관계’라고 한다), 상대방/상대방 대리인과의 관계(이하,

‘상대방 관계’라고 한다), 법관/법원 직원과의 관계(이하, ‘법원 관계’라고 한다), 검사/수사관과의 관계(이하, ‘수사기관 관계’라고 한다), 동료/소속 직원과의 관계(이하, ‘동료 관계’라고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뢰인 관계에서는 “당신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대방 관계에서는 “당신은 상대방 및 그 대리인(변호사 포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 관계에서는 “당신은 법관 및 법원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기관 관계에서는 “당신은 검사 및 수사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관계에서는 “당신은 같은 근무지에서의 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사용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척도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분류되며 이 중 해당하는 하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의 각 변수들에 대한 빈도의 분포를 파악하여 척도를 재분류하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를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으로, ‘보통이다’에 응답한 경우를 ‘보통’으로,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를 직무스트레스가 ‘낮음’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다. 혼란변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직업관련 특성, 생활습관별 특성으로 구성하였고, 각각의 구체적인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 연령, 결혼상태
- 직업관련 특성 : 자격취득경로, 경력기간, 사무소형태, 사무소에서의 지위
- 생활습관별 특성 : 흡연, 음주

특성별로 분류된 변수들을 각각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는 연령과 성, 결혼상태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26~39세, 40~49세, 50세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전체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았다. 결혼상태는 기혼과 기타로 분류되며, 기타에는 기혼 이외에 항목의 빈도가 매우 낮아 미혼과 이혼, 사별을 하나로 구성하였다.

직업관련 특성에는 자격취득 경로와 경력기간, 현재 사무소에서의 지위로 구분하였다. 자격취득 경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로를 의미하며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 군법무관시험으로 분류하였다. 경력기간은 자격 취득 후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기간을 의미하며, 사무소에서의 지위는 현재 근무하는 사무소에서의 지위 형태를 본 것으로 법무법인 등 구성원,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개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조직 내 변호사로 분류하였으며, 법무법인 등은 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하며, 조직 내 변호사는 사내 변호사, 정부, 국회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생활습관별 특성에는 흡연과 음주가 해당되며, 흡연은 피우지 않음, 끊었음, 현재 피움으로 구분하였고, 음주는 마시지 않음, 2~3회/월, 1~2회/주, 3회 이상/주로 분류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가. 사회 인구학적 특성

표 2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대상자의 연령은 26~65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42.0 \pm 8.7$ 세였다. 연령을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 26~39세가 294명(43.2%)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그 다음으로 40~49세가 231명(33.9%), 50세 이상이 156명(22.9%)의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524명(76.9%)으로 여성 157명(23.1%)에 비해 3배 이상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이 529명(77.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나. 직업관련 특성

변호사 자격취득 경로는 사법시험이 575명(84.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시험 93명(13.7%), 군법무관시험 13명(1.9%)의 순이었고, 경력기간은 5~14년이 307명(45.1%), 4년 이하가 259명(38.0%), 15년 이상이 115명(16.9%)의 순이었다.

사무소에서의 지위는 법무법인 등 구성원이 236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158명(23.2%), 개인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145명(21.3%), 조직 내 변호사 116명(17.0%),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6명(3.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다. 생활습관 특성

생활습관 특성 중 흡연여부는 총 연구대상자 중에 142명(20.9%)이 현재 흡연을 한다고 하였으며, 411명(60.4%)은 전혀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128명(18.8%)은 과거에 흡연하였으나 현재는 끊었다고 응답하였다. 음주여부에 대한 횟수는 주 1~2회의 경우 220명(32.3%)이었고, 월 2~3회의 경우 192명(28.2%), 주 3회의 경우 79명(11.6%)이었으며,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190명(27.9%)이었다.

#### 라.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결과는 직무요구(업무과중), 직무자율(목표 달성의 어려움), 보상부적절, 관계갈등(의뢰인, 상대방, 수사기관, 법원, 동료 관계)에 걸친 총 8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각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전체 681명 중 280명(41.1%)이 '높음'에, 295명(43.3%)이 '보통'에, 106명(15.6%)이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19.8이었고 표준편차는 8.1이었다. 저위험군은 546명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였고, 고위험군은 135명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하였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681	%
<b>사회인구학적 특성</b>			
연령	Mean±SD	42.0±8.7	
	26~39세	294	43.2
	40~49세	231	33.9
	≥50세	156	22.9
성	남성	524	76.9
	여성	157	23.1
결혼상태	기혼	529	77.7
	기타 <sup>1)</sup>	152	22.3
<b>직업관련 특성</b>			
자격취득 경로	사법시험	575	84.4
	변호사시험	93	13.7
	군법무관시험	13	1.9
경력기간(년)	≤4	259	38.0
	5~14	307	45.1
	≥15	115	16.9
사무소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등 구성원	236	34.7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158	23.2
	개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45	21.3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6	3.8
	조직 내 변호사 <sup>2)</sup>	116	17.0
<b>생활습관별 특성</b>			
흡연	피우지 않음	411	60.4
	끊었음	128	18.8
	현재 피움	142	20.9
음주	마시지 않음	190	27.9
	2~3회/월	192	28.2
	1~2회/주	220	32.3
	3회 이상/주	79	11.6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계속)

구 분		N=681	%
직무스트레스(전체) <sup>1)</sup>	낮음	106	15.6
	보통	295	43.3
	높음	280	41.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Mean±SD	19.8±8.1	
	저위험군(PWI-SF≤26)	546	80.2
	고위험군(PWI-SF≥27)	135	19.8

<sup>1)</sup>미혼, 이혼, 사별

<sup>2)</sup>사내변호사, 정부, 국회 기타 공공기관 근무 등

<sup>3)</sup>직무스트레스(전체): 총 8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였음



## 2. 직무스트레스의 분포

표 3은 직무스트레스의 분포를 파악한 것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전체 681명 중 280명(41.1%)이 ‘높음’에, 295명(43.3%)이 ‘보통’에, 106명(15.6%)이 ‘낮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각 하위 영역별로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직무요구(업무과중)가 174명(25.5%)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보상부적절이 132명(19.4%), 관계갈등이 125명(18.4%), 직무자율(목표달성의 어려움)이 97명(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갈등은 총 4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이다. 관계갈등을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스트레스가 높다고 응답한 분포를 살펴 본 결과, 의뢰인 관계(62명, 9.1%)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수사기관 관계(49명, 7.2%), 법원 관계(43명, 6.3%), 상대방 관계(38명, 5.6%), 동료 관계(35명, 5.1%)의 순이었다.

표 3. 직무스트레스의 분포

구 분		N=681	%
직무스트레스(전체) <sup>1</sup>	낮음	106	15.6
	보통	295	43.3
	높음	280	41.1
직무요구(업무과중)	낮음	234	34.4
	보통	273	40.1
	높음	174	25.5
직무자율(목표달성의 어려움)	낮음	315	46.3
	보통	269	39.5
	높음	97	14.2
보상부적절	낮음	300	44.1
	보통	249	36.6
	높음	132	19.4
관계갈등 <sup>2</sup>	낮음	222	32.6
	보통	334	49.0
	높음	125	18.4
의뢰인 관계	낮음	318	46.7
	보통	301	44.2
	높음	62	9.1
상대방 관계	낮음	393	57.7
	보통	250	36.7
	높음	38	5.6
법원 관계	낮음	409	60.1
	보통	229	33.6
	높음	43	6.3
수사기관 관계	낮음	392	57.6
	보통	240	35.2
	높음	49	7.2
동료 관계	낮음	476	69.9
	보통	170	25.0
	높음	35	5.1

<sup>1</sup>직무스트레스(전체): 총 8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였음

<sup>2</sup>관계갈등: 총 4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였음

표 4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이다. 연령별에서는 26~39세에서 142명(48.3%)이 '높음'에 해당하였으나, 40~49세에서 99명(42.9%), 50세 이상에서 39명(25.0%)이 각각 '높음'에 해당하였다. 성별로는 남성 208명(39.7%), 여성 72명(45.9%)이 각각 '높음'에 분포하였고, 결혼상태는 기혼 207명(39.1%), 기타(미혼, 이혼, 사별) 73명(48.0%)이 각각 '높음'에 해당하였다.

자격취득 경로별로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 43명(46.2%)이, 경력기간별로는 4년 미만의 경력기간의 경우 118명(45.6%), 사무소에서의 지위별로는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경우 13명(50.0%), 흡연별로는 현재 피움에 해당하는 경우 73명(51.4%)이 각기 '높음'에 해당되어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음주별로는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가 38명(48.1%)으로 '높음'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나, 마시지 않은 경우(47.9%)가 월 2~3회 음주하는 경우(38.0%), 주 1~2회 음주하는 경우(35.5%)이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저위험군은 168명(30.8%), 고위험군은 무려 112명(83.0%)이 각각 직무스트레스 '높음'에 해당하였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분포

구 분		합계 N=681	직무스트레스					
			낮음 n=106 15.6%		보통 n=295 43.3%		높음 n=280 41.1%	
<b>사회인구학적 특성</b>								
연령	26~39세	294	47	16.0	105	35.7	142	48.3
	40~49세	231	30	13.0	102	44.2	99	42.9
	≥50세	156	29	18.6	88	56.4	39	25.0
성	남성	524	74	14.1	242	46.2	208	39.7
	여성	157	32	20.4	53	33.8	72	45.9
결혼상태	기혼	529	80	15.1	242	45.8	207	39.1
	기타 <sup>1)</sup>	152	26	17.1	53	34.9	73	48.0
<b>직업관련 특성</b>								
자격취득 경로	사법시험	575	87	15.1	256	44.5	232	40.4
	변호사시험	93	18	19.4	32	34.4	43	46.2
	군법무관시험	13	1	7.7	7	53.8	5	38.5
경력기간(년)	≤4	259	41	15.8	100	38.6	118	45.6
	5~14	307	46	15.0	135	44.0	126	41.0
	≥15	115	19	16.5	60	52.2	36	31.3
사무소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등 구성원	236	28	11.9	112	47.4	96	40.7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158	26	16.5	56	35.4	76	48.1
	개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45	26	17.9	68	46.9	51	35.2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6	4	15.4	9	34.6	13	50.0
	조직 내 변호사 <sup>2)</sup>	116	22	19.0	50	43.1	44	37.9
<b>생활습관별 특성</b>								
흡연	피우지 않음	411	67	16.3	172	41.8	172	41.9
	끊었음	128	23	18.0	70	54.7	35	27.3
	현재 피움	142	16	11.3	53	37.3	73	51.4
음주	마시지 않음	190	32	16.8	67	35.3	91	47.9
	2~3회/월	192	30	15.6	89	46.4	73	38.0
	1~2회/주	220	32	14.5	110	50.0	78	35.5
	3회 이상/주	79	12	15.2	29	36.7	38	48.1
<b>사회심리적 스트레스</b> 지위험군(PWI-SF≤26)		546	105	19.2	273	50.0	168	30.8
고위험군(PWI-SF≥27)		135	1	0.7	22	16.3	112	83.0

<sup>1)</sup>미혼, 이혼, 사별

<sup>2)</sup>사내변호사, 정부, 국회 기타 공공기관 근무 등

### 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분포

표 5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각 변수들 간의 빈도의 차이와 유의성을 파악한 것이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저위험군(PWI-SF, 26점 이하)은 546명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하였고, 고위험군(PWI-SF, 27점 이상)은 135명으로 19.8%를 차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만이, 생활습관별 특성 중에는 흡연만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나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하는 135명 중 1명(0.9%)을 제외한 134명(99.3%)이 직무 스트레스 ‘보통’(22명, 7.5%) 또는 ‘높음’(112명, 40.0%)에 해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p < 0.001$ ).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인 직무요구, 직무자율, 보상부적절, 관계갈등에서도 각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 $p < 0.001$ )이 있었고, 관계갈등의 세부항목인 의뢰인 관계, 상대방 관계, 법원관계, 수사기관 관계, 동료 관계에서도 각각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 $p < 0.001$ )이 있었다. 특성별로는 26~39세(72명, 24.5%), 여성(36명, 22.9%), 미혼, 이혼, 사별(36명, 23.7%), 사법시험(119명, 20.7%), 4년 미만의 경력기간(59명, 22.8%),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43명, 27.2%), 현재 흡연(40명, 28.2%), 주 3회 이상 음주습관(19명, 24.1%)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서 각각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 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분포

구 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sup>†</sup>								P
	합계	저위험군 (n=546, 80.2%)				고위험군 (n=135, 19.8%)			
		N=681	n	가로%	세로%	n	가로%	세로%	
<b>사회인구학적 특성</b>									
연령	26~39세	294	222	75.5	(40.7)	72	24.5	(53.3)	0.003
	40~49세	231	185	80.1	(33.9)	46	19.9	(34.1)	
	≥50세	156	139	89.1	(25.5)	17	10.9	(12.6)	
성	남성	524	425	81.1	(77.8)	99	18.9	(73.3)	0.318
	여성	157	121	77.1	(21.2)	36	22.9	(26.7)	
결혼상태	기혼	529	430	81.3	(78.8)	99	18.7	(73.3)	0.215
	기타 <sup>1)</sup>	152	116	76.3	(21.2)	36	23.7	(26.7)	
<b>직업관련 특성</b>									
자격취득 경로	사법시험	575	456	79.3	(83.5)	119	20.7	(88.2)	0.320
	변호사시험	93	78	83.9	(14.3)	15	16.1	(11.1)	
	군법무관시험	13	12	92.3	(2.2)	1	7.7	(0.7)	
경력기간(년)	≤4	259	200	77.2	(36.6)	59	22.8	(43.7)	0.311
	5~14	307	251	81.8	(46.0)	56	18.2	(41.5)	
	≥15	115	95	82.6	(17.4)	20	17.4	(14.8)	
사무소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등 구성원	236	198	83.9	(36.3)	38	16.1	(28.2)	0.063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158	115	72.8	(21.0)	43	27.2	(31.8)	
	개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45	118	81.4	(21.6)	27	18.6	(20.0)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6	19	73.1	(3.5)	7	26.9	(5.2)	
	조직 내 변호사 <sup>2)</sup>	116	96	82.8	(17.6)	20	17.2	(14.8)	
<b>생활습관별 특성</b>									
흡연	피우지 않음	411	332	80.8	(60.8)	79	19.2	(58.5)	0.005
	끊었음	128	112	87.5	(20.5)	16	12.5	(11.9)	
	현재 피움	142	102	71.8	(18.7)	40	28.2	(29.6)	

표 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분포(계속)

구 분		합계 N=68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sup>†</sup>				p
			저위험군 (n=546, 80.2%)		고위험군 (n=135, 19.8%)		
			n=546	가로% 세로%	n=135	가로% 세로%	
음주	마시지 않음	190	149	78.4 (27.3)	41	21.6 (30.4)	0.481
	2~3회/월	192	160	83.3 (29.3)	32	16.7 (23.7)	
	1~2회/주	220	177	80.5 (32.4)	43	19.6 (31.8)	
	3회 이상/주	79	60	76.0 (11.0)	19	24.1 (14.1)	
직무스트레스(전체) <sup>‡</sup>	낮음	106	105	99.1 (19.2)	1	0.9 (0.7)	<0.001
	보통	295	273	92.5 (50.0)	22	7.5 (16.3)	
	높음	280	168	60.0 (30.8)	112	40.0 (83.0)	
직무요구(업무과중)	낮음	234	225	96.1 (41.2)	9	3.9 (6.7)	<0.001
	보통	273	222	81.3 (40.7)	51	18.7 (37.8)	
	높음	174	99	56.9 (18.1)	75	43.1 (55.6)	
직무자율 (목표달성의 어려움)	낮음						<0.001
	보통	315	303	96.2 (55.5)	12	3.8 (8.9)	
	높음	269	206	76.6 (37.7)	63	23.4 (46.7)	
보상부적절	낮음	97	37	38.1 (6.8)	60	61.9 (44.4)	<0.001
	보통	300	279	93.0 (51.1)	21	7.0 (15.6)	
	높음	249	199	79.9 (36.4)	50	20.1 (37.0)	
관계갈등 <sup>§</sup>	낮음	132	68	51.5 (12.5)	64	48.5 (47.4)	<0.001
	보통	222	209	94.1 (38.3)	13	5.9 (9.6)	
	높음	334	273	81.7 (50.0)	61	18.3 (45.2)	
의뢰인 관계	낮음	125	64	51.2 (11.7)	61	48.8 (45.2)	<0.001
	보통	318	294	92.5 (53.8)	24	7.6 (17.8)	
	높음	301	226	75.1 (41.4)	75	24.9 (55.6)	
상대방 관계	낮음	62	26	41.9 (4.8)	36	58.1 (26.7)	<0.001
	보통	393	352	89.6 (64.5)	41	10.4 (30.4)	
	높음	250	181	72.4 (33.1)	69	27.6 (51.1)	
	높음	38	13	34.2 (2.4)	25	65.8 (18.5)	

표 5.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분포(계속)

구 분		합계 N=681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sup>†</sup>				p
			저위험군 (n=546, 80.2%)		고위험군 (n=135, 19.8%)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법원 관계	낮음	409	356	87.0 (65.2)	53	13.0 (39.3)	<0.001
	보통	229	172	75.1 (31.5)	57	24.9 (42.2)	
	높음	43	18	41.9 (3.3)	25	58.1 (18.5)	
수사기관 관계	낮음	392	342	87.2 (62.6)	50	12.8 (37.0)	<0.001
	보통	240	185	77.1 (33.9)	55	22.9 (40.7)	
	높음	49	19	38.8 (3.5)	30	61.2 (22.2)	
동료 관계	낮음	476	414	87.0 (75.8)	62	13.0 (45.9)	<0.001
	보통	170	109	64.1 (20.0)	61	35.9 (45.2)	
	높음	35	23	65.7 (4.2)	12	34.3 (8.9)	

† 사회심리적 스트레스(PWI-SF): 저위험군=26점 이하, 고위험군=27점 이상

<sup>1)</sup>미혼, 이혼, 사별

<sup>2)</sup>사내변호사, 정부, 국회 기타 공공기관 근무 등

<sup>†</sup>직무스트레스(진체): 총 8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였음

<sup>§</sup>관계갈등: 총 4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였음

#### 4.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표 6은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성, 연령, 결혼상태, 자격취득 경로, 변호사 경력기간, 사무소에서의 지위, 흡연, 음주를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보통인 집단은 9.07배 높았고(95% CI: 1.20-68.58), 높은 집단은 69.24배(95% CI: 9.46-506.85)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1.14배(95% CI: 0.62-2.09) 높았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별과 연령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된 경우는 변호사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된 경우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2.22배(95% CI: 1.07-4.64)나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6. 직무스트레스(전체)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구 분		OR	95% CI
직무스트레스(전체) <sup>1)</sup>	낮음	1.00	
	보통	9.07	( 1.20 — 68.58 )
	높음	69.24	( 9.46 — 506.85 )
<b>사회인구학적 특성</b>			
연령	26~39세	2.61	( 0.99 — 6.90 )
	40~49세	2.05	( 0.89 — 4.73 )
	50세 이상	1.00	
성	남성	1.00	
	여성	1.14	( 0.62 — 2.09 )
결혼상태	기혼	1.00	
	기타 <sup>1)</sup>	1.00	( 0.56 — 1.78 )
<b>직업관련 특성</b>			
자격취득 경로	사법시험	2.22	( 1.07 — 4.64 )
	변호사시험	1.00	
	군법무관시험	0.72	( 0.07 — 7.18 )
변호사 경력(년)	≤4	1.00	
	5~14	0.77	( 0.42 — 1.40 )
	≥15	1.79	( 0.69 — 4.66 )
사무소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등 구성원	0.89	( 0.42 — 1.91 )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1.54	( 0.79 — 3.03 )
	개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28	( 0.58 — 2.82 )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49	( 0.48 — 4.68 )
	조직 내 변호사 <sup>2)</sup>	1.00	
<b>생활습관 특성</b>			
흡연	피우지 않음	1.00	
	끊었음	0.89	( 0.44 — 1.77 )
	현재 피움	1.41	( 0.79 — 2.53 )
음주	마시지 않음	1.00	
	2~3회/월	0.88	( 0.49 — 1.60 )
	1~2회/주	1.16	( 0.65 — 2.09 )
	3회 이상/주	1.32	( 0.62 — 2.83 )

<sup>1)</sup>미혼, 이혼, 사별

<sup>2)</sup>사내변호사, 정부, 국회 기타 공공기관 근무 등

<sup>3)</sup>직무스트레스(전체): 총 8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였음

## 5. 직무스트레스(하위영역별)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표 7은 직무스트레스를 직무요구, 직무자율, 보상부적절, 관계갈등의 하위영역별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에서 사용한 보정변수는 성, 연령, 결혼상태, 자격취득 경로, 변호사 경력기간, 사무소에서의 지위, 흡연, 음주이다.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직무요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2.96배(95% CI:1.16-7.55) 높게 나타났다. 직무자율에서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직무자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10.17배(95% CI:4.17-24.79) 높았고, 보통인 집단도 3.97배(95% CI:1.82-8.66) 높았다. 보상부적절에서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보상부적절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4.09배(95% CI:2.02-8.25), 보통인 집단이 2.36배(95% CI:1.21-4.59) 높았으며, 관계갈등에서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관계갈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3.89배(95% CI:1.70-8.88) 높았다. 다만, 직무요구와 관계갈등이 보통인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 직무스트레스(하위영역별)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구 분		OR	95% CI
<b>직무스트레스</b>			
직무요구(업무과중)	낮음	1.00	
	보통	1.99	( 0.80 — 4.92 )
	높음	2.96	( 1.16 — 7.55 )
직무자율(목표달성의 어려움)	낮음	1.00	
	보통	3.97	( 1.82 — 8.66 )
	높음	10.17	( 4.17 — 24.79 )
보상부적절	낮음	1.00	
	보통	2.36	( 1.21 — 4.59 )
	높음	4.09	( 2.02 — 8.25 )
관계갈등 <sup>§</sup>	낮음	1.00	
	보통	1.56	( 0.72 — 3.35 )
	높음	3.89	( 1.70 — 8.88 )
<b>사회인구학적 특성</b>			
연령	26~39세	1.86	( 0.64 — 5.45 )
	40~49세	1.55	( 0.62 — 3.86 )
	50세 이상	1.00	
성	남성	1.00	
	여성	1.29	( 0.65 — 2.55 )
결혼상태	기혼	1.00	
	기타 <sup>1)</sup>	1.25	( 0.65 — 2.41 )
<b>직업관련 특성</b>			
자격취득 경로	사법시험	3.43	( 1.48 — 7.95 )
	변호사시험	1.00	
	군법무관시험	1.14	( 0.10 — 12.95 )
변호사 경력(년)	≤4	1.00	
	5~14	0.67	( 0.35 — 1.28 )
	≥15	1.79	( 0.63 — 5.09 )

표 7. 직무스트레스(하위영역별)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계속)

구 분		OR	95% CI
사무소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등 구성원	0.73	( 0.32 — 1.68 )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1.85	( 0.87 — 3.90 )
	개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0.94	( 0.39 — 2.23 )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42	( 0.43 — 4.70 )
	조직 내 변호사 <sup>2)</sup>	1.00	
생활습관 특성	흡연		
	피우지 않음	1.00	
	끊었음	0.77	( 0.37 — 1.62 )
	현재 피움	1.49	( 0.79 — 2.81 )
음주	마시지 않음	1.00	
	2~3회/월	0.86	( 0.45 — 1.66 )
	1~2회/주	1.22	( 0.64 — 2.34 )
	3회 이상/주	1.54	( 0.65 — 3.65 )

<sup>1)</sup>미혼, 이혼, 사별 등

<sup>2)</sup>사내변호사, 정부, 국회 기타 공공기관 근무 등

<sup>3)</sup>관계갈등: 총 4개 문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높음'으로 응답하면 '높음'으로, 모든 문항에 '낮음'으로 응답한 경우를 '낮음'으로, '높음'과 '낮음'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응답을 한 경우를 '보통'으로 분류하였음

## IV. 고 찰

이 연구는 변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이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요구, 직무자율, 보상부적절, 관계갈등 등 4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고, 각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영역은 스트레스가 '높음'과 '보통', '낮음'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PWI-SF를 이용하여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된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재형(2002)이 2002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앞으로 변호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0.8%, 유지된다는 답변이 16.5%에 불과한 반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8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률신문사가 2016년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이메일 온라인 방식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법률신문 보도자료, 2016), 전체 응답자 2563명 가운데 현재 수입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변호사는 19.9%(510명), 보통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32.1%(824명), 불만족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48%(1,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법률시장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52.7%(1,351명),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35.8%(918명),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가 0.5%(14명),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비관적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보상부적절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낮음’ 44.1%, ‘보통’ 36.6%, ‘높음’ 19.4%로 나타났으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조사결과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측정도구 및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결과가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재형(2002)은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용기(2001)의 의사 및 한의사에 대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의사보다는 낮고 한의사보다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명리나(2011)가 국내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의사, 변호사, 소방관, 경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는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의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변호사, 소방관보다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연구들과는 연구대상자 및 조사도구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군과의 직무스트레스를 직접 비교 평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없었다. 앞으로 변호사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직업군과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비교 평가는 현 시대의 스트레스 추이를 살피고 다면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김준호 등(2012)이 ‘2006년 취업자 근로환경’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취업기간이 1년 이상인 전국의 만 20세 이상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직무스트레스 영역을 3분위수에 의거 저, 중, 고의 3집단으로 분류하여 시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근로환경에 따른 고위험 직무스트레스 노출 근로자는 직무자율성결여에서 37.8%, 직무요구도에서 35.1%, 보상부적절에서 25.2%였다.

이 연구결과는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변호사가 직무요구(업무과중)에서 25.5%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부적절에서 19.4%, 직무자율(목표달성의 어려움)에서 14.2%의 변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임금근로자와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별에서 다소 다른 분포를 보였다.

고상백 등(2004)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업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적 특성에서는 직무요구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직업불안정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재혁 등(2008)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비차비는 보상부적절이 2.90배로 가장 높았고, 직무요구가 1.72배, 관계갈등이 1.53배의 순이었고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하였다. 이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비차비는 보상부적절이 4.09배, 관계갈등이 3.89배, 직무요구가 2.96배로 나타나 소방공무원보다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므로, 변호사가 소방공무원에 비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 스트레스는 수면 결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고(Kalimo 등, 2000), 장시간 노동은 불충분한 회복과 삶의 질 저하를 통해 건강수준 저하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ärmä, 2003), Sparks 등(1997)은 메타분석에서 노동 시간은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이는 Hulst(2003)의 연구에서도 장시간 근로는 심혈관 질환, 당뇨, 장애를 가진 은퇴, 주관적으로 보

고된 육체적 건강, 피로 등 증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 또한 장시간 근무 및 과중한 업무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가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변호사에 비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2.96배 높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므로 앞서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지 않았다.

유경열 등(2011)이 경기도 내 한 대규모 전자제품 제조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 17.1%, 여성 46.9%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최은경(2009)이 국내 한 기업의 사무직,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의 빈도가 남성 18.9%, 여성 22.9%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이 1.14배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앞서 언급한 유경열 등이 연구한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더 많은 것은 동일하였지만, 변호사의 경우 성별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체 근로자에 비하여는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Tsai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대만 법률회사에 근무하는 송무 변호사들이 사무 변호사들에 비해 직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높고, 근무지에서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반면, 직무 관련 소진(work-related burnout)과 의뢰인 관련 소진(client-related burnout)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 비율이 조직 내 변호사는 37.9%에 불과하였으나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는 48.1%,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50.0%인 것으로 관찰되었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

비율 또한 조직 내 변호사 17.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7.2%,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6.9%였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도 조직 내 변호사에 비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1.54배,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1.49배인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 변호사가 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에 비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빈도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위험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sai와 Chan(2011)의 연구에 의하면, 2008년 타이완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 재무 관련 근로자들은 직무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이 심화되었던 반면, 변호사들은 국가적 재정위기 후에 노력보상비(effort - reward ratio)의 변화로 인한 연봉이 증가되어 오히려 직무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와 소진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적 재정위기가 오히려 변호사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흥미롭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개업자 수는 2007년도에 8,143명이었으나 2013년도에 14,242명으로 5년 만에 74.9%나 증가하였음에도, 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2007년도에 1,670,475건에서 2013년에는 1,605,623건으로 오히려 3.9%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1인당 평균 본안 사건 경유건수도 2007년도에 52.2건에서 2013년도에는 33.3건으로 5년 만에 무려 36.2%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국가적 재정위기를 겪은 2008년도의 법원 본안 사건 접수 건수는 1,753,088건으로 2007년도 대비 5% 증가하였고, 2008년도 변호사 1인당 본안 사건 경유 건수는 53.0건으로 2007년도 52.2건보다 미소하게 증가하였다(채상국, 2015). 이는 국가적 재정위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분쟁이 증가하여 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의 건수 및 변호사 선임건수가 단기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변호사들의 직무 관련 심리적 스트레스는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보상부적절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가 낮은 경우에 비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이 4.09배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므로 Tsai 등의 연구결과와 이 연구가 상충되지 않았다.

Meltzer(198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에 비하여 직무와 관련한 업무량, 고객 수, 업무시간 등 만성적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한 노출을 줄임으로써 높은 직업 만족감과 낮은 은퇴율을 나타내었고, 젊은 변호사들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연령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 빈도는 40세 미만에서 24.5%, 40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19.9%, 50세 이상에서 10.9%의 순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빈도가 줄어들었으며, 또한 연령별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 오즈비를 살펴본 결과 50세 이상 변호사들에 비하여, 40세 미만의 변호사들은 2.61배 높았고,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2.0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50세 이상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에 비하여 스트레스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비록 이 연구 대상자가 이전에 발표된 문헌들의 연구 대상자와는 다른 집단이었지만, 이 번 연구를 통해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가 기존 연구들의 결과(김환철 등, 2006; 하재혁 등, 2008)와 상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의 실태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연구 결과는 주로 국내에서 발표된 문헌 중에서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직무스트레스 결과와 국외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번 연구를 통하여 총 대상자 681명 중 280명(41.1%)이 직무스트레스 ‘높음’에, 135명(19.8%)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변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개인이 소유하는 스트레스 대처 자원에 따라 그 적응상태가 달라진다(Lazarus와 Folkman, 1984). 즉,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자원에 따라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야기되는 부정적인 증상에 대해서 탄력성을 보이거나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 자원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어려움을 약화시킬 수 있다. 개인이 충분하고 적절한 자원을 가졌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문제시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쉽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이거나 적응할 수 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할 경우 개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한옥자, 2002).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의 갈등은 개인의 자기 방어기전(self protective mechanisms)과 대인관계 지지 네트워크(interpersonal support networks)에 의하여 누그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aplan, 2013), 양진원(199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 지각상태와 부정적인 직무태도와의 관계를 조정하여 주며, 직무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여 주는 지원 원천 중에서는 배우자의 지원보다는 상사와 동료의 지원이 전반적으로 조정효과가 크고, 지원 기능 중에서는 정서적 지원이 다른 지원의 형태보다 조정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조동란(2006)은 사업장의 규모 보다는 업종과 사업장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영역별로 스트레스 수준이 다양하므로 모든 사업장에 획일화된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으므로 업종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각 사업장별로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세진 등(1997)이 직업적 특성(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적 지지를 중앙값을 기준으로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저긴장 집단, 고긴장 집단, 능동적 집단, 수동적 집단과 연결시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파악한 연구에 의하면, 높은 비차비를 나타낸 집단은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능동적 집단과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고긴장 집단이었으며 낮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집단에서 비교적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볼 때 직업군에 적합한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013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최초로 직선으로 선출한 이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변론권 침해 등 각종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으며, 2015년 10월부터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들이 겪게 되는 불합리한 점들의 개선을 요구하고 그 답변을 듣는 ‘각급 법원 및 검찰과의 간담회’ 개최하고 있으며, ‘법관평가제’를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들은 변호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수사기관, 법원과의 관계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변호사,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내변호사들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여성변호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일가정양립위원회’,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용변호사들의 근로처우를 개선하고 근로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근로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청년변호사,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에게 대인관계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도록 운용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어 현 시대 변호사들의 스트레스를 직접 파악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실시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실태 조사라는 점에서 큰 강점이 있다. 또한 이 연구는 2014년 6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8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2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각 1회 등 총 15회에 걸쳐 실시한 변호사 윤리연수를 수강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표본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업회원 현황(2016)에 의하면 개업변호사는 총 15,954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78.3%, 여성 21.7%이며, 연령별로는 26~39세 41.5%, 40~49세 30.7%, 50세 이상 27.8%인데, 이 연구에 참여한 변호사의 분포는 남성 76.9%, 여성 23.1%였고, 26~39세 43.2%, 40~49세 33.97%, 50세 이상

22.9%로 실제 개업변호사 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성별, 연령별 분포에서도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변호사들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시키는 요인을 밝히는 기초연구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한 특정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단면연구라는 점에서 결과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관련성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조사의 한계 때문에 질문의 응답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배포한 질문지의 회수율이 41.7%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도구는 자가 개발한 도구이며, 관계갈등 이외의 하위 영역별 평가를 단일 문항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보건학 분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전체 논문 중 10%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특별한 인구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구진이 자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고,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다양한 만큼 단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자는 식의 주장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현실적이지도 않으며(유명순과 조원섭, 2011), ‘업무 만족도’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변수의 평가는 단일 항목으로도 높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Wanous 등, 1997),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변호사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결과, 총 대상자 681명 중 280명(41.1%)이 직무스트레스 ‘높음’에, 295명(43.3%)이 직무스트레스 ‘보통’에, 106명(15.6%)이 직무스트레스 ‘낮음’에 각 해당되었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두 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546명(80.2%)이 저위험군에 속하였고, 135명(19.8%)이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하는 135명 중 1명(0.9%)을 제외한 134명(99.3%)이 직무스트레스의 ‘보통’(22명, 7.5%) 또는 ‘높음’(112명, 40.0%)에 해당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은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보통인 집단은 9.07배(95% CI: 1.20-68.58), 높은 집단은 69.24배(95% CI: 9.46-506.85)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무스트레스 하위 영역별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속할 위험을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직무요구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2.96배(95% CI:1.16-7.55) 높게 나타났다. 직무자율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직무자율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10.17배(95% CI:4.17-24.79) 높았고, 보통인 집단도 3.97배(95% CI:1.82-8.66) 높았다. 보상부적절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보상부적절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4.09배(95% CI:2.02-8.25), 보통인 집단이 2.36배(95% CI:1.21-4.59) 높았으며, 관계갈등에서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은

관계갈등이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은 집단이 3.89배(95% CI:1.70-8.88) 높았다. 다만, 직무요구와 관계갈등이 보통인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있는 위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변호사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 정의와 기본적 인권 옹호라는 사명을 실현하게 된다. 오늘날 변호사들은 국내외적으로 법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로 인한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증가는 개별 변호사에 대한 심각한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 정의와 기본적 인권 옹호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변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 심리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 중재가 필요하다. 변호사들 스스로도 업무 중 주로 노출되는 환경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긴장감 완화와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들에게 개인적 자원을 적절히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대인관계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변호사의 스트레스 변화 추이에 대한 면밀

한 분석은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방안의 개발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적정 배출수와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등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상백, 손민아, 공정옥, 이철갑, 장세진, 차봉석: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6(1): 103-113, 2004
- 김준호, 장세진: 근로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건강이상과의 관련성. *보건과 사회과학* 31: 5-24, 2012
- 김환철, 권근상, 고대하, 임종한, 박신구, 신주연, 이의철, 김용규: 한 대학병원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8(1): 25-34, 2006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개업회원 현황에 대한 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회원현황자료). 문서번호 회원 제3600호, 2016
- 명리나: 평가자 및 직업종류에 따른 특정 직업에 대한 인식(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2011
- 문형구, 최병권, 고육: 직무스트레스 연구의 동향과 향후 방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4(3): 117-187, 2010
- 박정선: 직무스트레스의 현대적 이해: 스트레스의 정의. *고려의학*, pp.11-12, 2005



법률신문[보도자료]: “변호사의 삶 설문조사” 변호사 52% 월 소득 300만~600만원… 대기업 직원보다 낮다. <http://www.lawtimes.co.kr>

송인숙: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성격특성 및 직무만족. 건강상태의 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2007

양진환: 직무스트레스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의 조종효과. *한국인사관리학회지* 16: 251-268. 1992

유경열, 이경중, 민경복, 박규철, 채상국, 박재범: 한 대기업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1(3):146-155, 2011

유명순, 조원섭: 한국인사·조직학회 발표논문집. 2011(1): 521-553, 2011

장세진: 건강 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제4장 스트레스. 대한예방의학회 편. 서울, 계축문화사, pp.92-143, 2000

장세진, 고상백, 강동묵, 김성아, 강명근, 이철갑, 정진주, 조정진, 손미아, 채창호, 김정원, 김정일, 김형수, 노상철, 박재범, 우종민, 김수영, 김정연, 하미나, 박정선, 이경용, 김형렬, 공정옥, 김인아, 김정수, 박준호, 현숙정, 손동국: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17(4): 297-317, 2005

장세진, 차봉석, 고상백, 강명근, 고상열, 박종구: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 스트레스간의 관련성. *대한예방의학회지* 30(1): 129-143, 1997
- 정동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내일을 여는 지식, pp.11-32, 2010
- 정재형: 변호사의 전문직업성, 직무스트레스 직업만족도. *형평과 정의* 17: 204-222, 2002
- 조동란: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요인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을 이용하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5(1): 58-71, 2006
- 조용기: 의사, 한의사의 전문직업성, 직무스트레스 및 직업만족도(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2001
- 채상국: 최근 변협이 이슈와 쟁점에 관한 연구: 법률시장의 사막화, 그 원인과 대책. 대한변호사협회, pp.7-31, 2015
- 채상국, 김정림, 이경중, 박재범: 변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인권과 정의* 458: 6-26, 2016
- 최은경: 직종에 따른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비교(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009
- 하재혁, 김동일, 서병성, 김원술, 유승호, 김수근: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건강.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0(2): 104-111, 2008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2차년도) 보고서. 2004

한옥자: 후기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개인적 자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원, 2002

Caplan RD: Person-environment fit: Past, present, and future: Stress research (ed. Cooper IC). New directions for the 1980s. London, Wiley, pp.35-78, 198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http://www.cdc.gov>

Estryn-Behar M, Kaminski M, Peigne E, Bonnet N, Vaichere E, Gozlan C, Azoulay S, Giorgi M: Stress at work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female hospital workers. *Br J Ind Med* 47(1): 20-28, 1990

Goldberg D: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UK),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1978

Härmä M: Are long workhours a health risk?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9(3): 167-169, 2003

Hulst MVD: Long work hours and health.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9(3): 171–188, 2003

Kalimo R, Tenkanen L, Härmä M, Poppius E, Heinsalmi P: Job stress and sleep disorders: findings from the Helsinki Heart Study. *Stress Med* 16(2): 65–75, 2000

Kaplan HB: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2013

Karasek, RA.: Job Demands, Job Decision Latitude, and Mental Strain: Implications for Job Re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4(2):285–308, 1979

Meltzer MW: The reduction of occupational stress among elderly lawyers: the creation of a functional niche. *Int J Aging Hum Dev* 13(3): 209–219, 1981

Sparks K, Cooper C, Fried Y, Shirom A: The effects of hours of work on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J Occup Org Psychol* 70(4): 391–408, 1997

Tsai FJ, Chan CC: The impact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on psychological work stress among financial workers and lawyer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84(4): 445–452, 2011

Tsai FJ, Huang WL, Chan CC: Occupational Stress and Burnout of Lawyers. *J Occup Health* 51(5): 443-450, 2009

Wanous JP Reichers AE. Hudy MJ: Overall job satisfaction: how good are single-item measures? *J Appl Psychol* 82(2): 247-252, 1997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Occupational health. What is work-related stress?: [http://www.who.int/occupational\\_health](http://www.who.int/occupational_health)



## ABSTRACT

###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lawyers in Korea**

Sang Kug Chai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 Jo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lawyers in Korea. From June to December, 2014, we conduc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or lawyers who participated in ethics training. A total of 68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the total of 731 questionnaires except multiple answers and incorrectly written questionnaires. Occupational stress was assessed by analyzing the responses to 8 items of job demands (work overload), job autonomy (difficulty in achieving goal), lack of reward, and relationship conflict (client, counterpart, court,

investigation agency, colleagues)", and psychosocial stress was assessed by using the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 (PWI-SF).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Chi squared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681 subjects, 280 (41.1%) were in the 'high' occupational stress, 295 (43.3%) were in the 'normal' occupational stress and 135 (19.8%) were in the high-risk group of psychosocial stress. In this study, 134 (99.3%) out of 135 subjects in the high-risk group of psychosocial stress were exposed to occupational stress ( $p < 0.001$ ). The risk of belonging to the high risk group of psychosocial stress was 9.07 times (95% CI: 1.20-68.58) higher in the group with normal occupational stress and 69.24 times (95% CI: 9.46-506.85) higher in the group with high occupational stress. Therefore, Korean lawyer's occupational stress w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social psychological stress of lawyers.

---

Key words : occupational stress, psychosocial stress, lawyers





## 「변호사 직무스트레스 현황 설문조사」

### 1. 목적

현재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개방 및 변호사 배출수의 폭증 등으로 변호사들의 사건 수입 경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국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습득이 용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의한 사전분쟁조정제도 등이 활성화되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등의 변호사 직역 침범도 더욱 구조화, 제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법률시장의 변화 요인으로 인하여, 대다수 변호사들은 시간이 갈수록 종전에 비하여 상대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변호사들 사이에도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변호사들에 대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변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하여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후일 변호사 배출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2. 방법

이 설문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조사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며, 내용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3. 주의사항

조사로 인하여 제공된 개인정보와 내용은 철저히 비밀보장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설문조사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본 설문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4년 \_\_\_\_\_ 월 \_\_\_\_\_ 일

본 인 \_\_\_\_\_ (자필서명)

조사원 \_\_\_\_\_ (자필서명)

■ **조사주관** : 대한변호사협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 **제출기한** : 2014년    월    일

■ **제출방법** : 직접 교부, FAX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출처** :

주소: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FAX : (02)3476-2771

전자우편 : mer1476@koreanbar.or.kr

■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사 채 상 국(02-574-2112)

전자우편 : frika@naver.com

※ 설문지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02-2087-7741) 주시면 전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이번 설문에 참여해 주신 회원님께는 1시간의 공익활동이 인정됩니다.

## I.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에 경험하셨거나 느끼셨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해당되는 곳에 **빠지는 문항 없이 모두 V표**하여 주십시오.

항 목	항상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약간 (이따금)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현재 매우 편안하며 건강하다고 느낀다.				
2. 잠자고 난 후에도 개운한 감이 없다.				
3. 매우 피곤하고 지쳐 있어 먹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느낀다.				
4. 근심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한다.				
5. 정신이 맑고 깨끗하다고 느낀다.				
6. 기력(원기)이 왕성함을 느낀다.				
7. 밤이면 심란해지거나 불안해 진다.				
8. 대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잘 관리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9. 전체적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되어가고 있다고 느낀다.				
10. 내가 행한 일의 방법이나 절차에 만족한다.				
11. 어떤 일을 바로 착수(시작)할 수 있다.				
12.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다.				
13. 안절부절 못하거나 성질이 심술궂게 되어진다.				
14.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15. 불행하고 우울함을 느낀다.				
16. 나 자신에 대해 신뢰감이 없어지고 있다.				
17.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행복감을 느낀다.				
18.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 Ⅱ. 기타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거나 기입하여 주십시오.

1. 귀하의 변호사자격 취득 경로는?

- ①사법시험    ②변호사시험    ③군법무관시험    ④기타(\_\_\_\_\_)

2. 귀하의 통산한 변호사 경력은?

- ①5년 미만    ②5년~15년 미만    ③15년~25년 미만    ④25년 이상

3.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무소 형태는?

- ①법무법인 등(법무법인 유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 포함, 이하 같음)  
②개인법률사무소  
③영리 및 비영리법인(사내변호사)  
④정부, 국회 기타 공공기관 근무  
⑤휴업(미취업, 미개업 포함)  
⑥기타

4.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에서 귀하의 지위는?

- ①법무법인 등 구성원 변호사    ②법무법인 등 소속 변호사  
③개인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④개인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    ⑤ 기타

5. 귀하의 성별은?

- ①남성    ②여성

6. 귀하의 생년월일과 나이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 만 \_\_\_\_\_세

7. 귀하의 결혼여부는?

- ①미혼    ②기혼    ③이혼/ 별거/ 사별

8. 귀하의 음주(술)습관은 어떠하십니까?

- ①(거의)마시지 않는다.      ②월 2~3회 정도 마신다.      ③일주일에 1~2회 마신다.  
④일주일에 3~4회 마신다.      ⑤거의 매일 마신다.

9. 술(소주 2홉 1병 기준)을 마신다면 1회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 ①소주 반병 이하      ②소주 한병      ③소주 1병반      ④소주 2병 이상

10. 귀하는 담배를 어느 정도 피우십니까?

- ①피우지 않는다      ②과거에 피웠으나 지금은 끊었다      ③현재도 피운다

11. 담배를 피운다면 하루에 피우는 양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반갑 미만      ②반갑 이상~한갑 미만      ③한갑 이상~두갑 미만      ④두갑 이상

12. 담배를 과거에 피웠거나 현재 피우신다면 얼마동안입니까?

- ①5년 미만      ②5~9년      ③10~19년      ④20~29년      ⑤30년 이상

13. 귀하는 몸에 땀이 났 정도의 운동을 30분 이상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 ①안한다      ②1~2회      ③3~4회      ④5~6회      ⑤거의 매일

14. 당신의 건강은 대체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좋음      ②좋음      ③보통      ④나쁨      ⑤매우 나쁨

15. 당신은 열악한 보상 및 재정적 압박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6. 당신은 장시간 근무나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7. 당신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8. 당신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19. 당신은 상대방 및 그 대리인(변호사 포함)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0. 당신은 법관 및 법원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1. 당신은 검사 및 수사관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22. 당신은 같은 근무지에서의 동료 및 직원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지 않다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